

의안번호	제 1013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발 의 자	정상교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2년 3월 8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정상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13
----------	------

발의연월일 : 2022년 3월 8일
발 의 자 : 정상교, 최경천, 김국기
김영주, 박성원, 임동현
이수완

1. 제안 이유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 기금 설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나.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다. 기금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라.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마.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바. 회계관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사. 기금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시설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제2조에 따른 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 금액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교육감은 기금을 충청북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행정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시설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

② 제1항의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 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는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③ 교육감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일정 금액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사업
2. 제1호 외의 사업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제1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을 개축하는 사업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조례로 정한 사업